

편입학자 학점인정 시행세칙

시행일 : 2021. 03. 01.

제1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에 의거 본 대학교에 편입학한 자에 대한 학점 인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시행세칙은 3학년(단, 의학계열(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)은 본과 1학년)으로 편입학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학점인정) ① 편입학자가 전적대학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승인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에서 기 취득한 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졸업학점의 2분의 1이내(단, 5년제 과정은 5분의 2이내, 의학계열(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)은 예과 수료학점)까지 [별표1] 「편입학자 학점 인정 기준표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구분별로 인정한다.

③ 의학계열(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)로 편입한 자는 예과를 수료한 것으로 본다.

④ 약학과(2+4년제)로 편입한 자는 편입학 학점인정을 하지 않고, 입학 시 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.

⑤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⑥ 의학계열(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), 약학대학, 간호과학대학 편입학자는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저학년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학 연한이 늘어날 수 있다.

⑦ 학점인정 순서는 전공과목은 전공기초, 전공필수, 전공선택 순으로 하고, 교양과목은 필수교과, 자유이수교과, 배분이수교과 순으로 한다.

제4조(학점 이수) ① 편입학자는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외에 각 전공의 교육과정기본구조표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편입학자는 학칙 제58조에서 정한 졸업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③ 기타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5조(다전공과정의 이수) ① 편입학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전공이수승인제에 의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전공과정(제2~3전공)을 이수할 수 있다.

② 다전공과정(제2~3전공)은 전적대학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, 소정의 다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다전공자는 제1전공에서 소정의 다전공학점을 이수하되, 본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이 다전공이수학점의 최소 6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④ 부전공과정은 전적대학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
제6조(학적부 성적 기록 관리) ① 전적대학 취득성적의 본교 인정학점은 교과목 이수구분별로 기록한다.

② 편입학 후 취득성적은 학적부에 기록, 관리하며 졸업 시 평균평점은 본교 이수 성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③ 약학과(2+4년제)는 편입학 인정학점을 기재하지 않는다.

제7조(준용) ① 위탁생 및 외국학생에 대하여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기준을 준용한다.

② 본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을 준용한다.

제8조(학적 기타) ① 편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. 다만, 약학과(2+4년제) 학생은 예외로 한다.

② 편입학자는 전과할 수 없다.

③ 편입학 학기의 학점인정심사 결과는 부전공, 다전공과정 이수 등의 사유로 재차 정정할 수 없다.

<부칙>

① (시행일) 본 기준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기준은 1997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C.R.S.인증시험의 경우에는 2001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.

<부칙>

① (시행일) 본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기준은 2004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

<부칙>

① (시행일) 본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기준은 2006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

<부칙>

① (시행일) 본 기준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부칙>

① (시행일) 본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부칙>

① (시행일) 본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기준은 2017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<부칙>

① (시행일) 본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기준은 2021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편입학자 학점인정 기준표

구분	일반계열*, 약과학과, 한약학과, 간호학과	간호학과(야)	약학과(2+4년제)	의학계열 (의,한,치)
총인정학점	졸업학점의 50% 이내	졸업학점의 50% 이내	없음	예과 수료학점
전공학점 (전기+전필+전선)	전공이수학점의 40% 이내	전공학점의 50% 이내	없음	예과 수료 인정
교양학점	- 일반편입 : 심사 인정 - 학사편입 : 이수한 것으로 인정		이수한 것으로 인정	
최소잔여 수료학기	4개 학기 이상 (단, 5년제인 경우 6개 학기 이상)	4개 학기 이상	8개 학기 이상	8개 학기 이상

※ 계열구분에서 일반계열* : 약학대학, 간호과학대학, 의학계열 대학 제외한 학과

※ 학점이 소수점인 경우,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